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

의아번호

28

제출일자 : 1998. 8. 22.

제출자: 거창군수

■ 개정이유

○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·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 하고자 군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의 행정기구중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 등을 통합하고 이 에 알맞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는 것임

■ 주요골자

- 총정원을 686명에서 601명으로 85명 감함
- 현행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 구의 정원만 규정하여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부여

현 행 (686명)	수 정 (601명)
 · 군 본 청 : 215명 · 의회사무기구 : 16명 · 직속기관 : 132명 · 사 업 소 : 41명 · 읍 면 : 282명 	 집행기관의 정원 : 58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총 계 : 601명

■ 개정근거

- 경남도 행정12200 10406('98. 6. 22)호에의한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
- 지방지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 21조 제1항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

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(정원의 총수) 거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 : 589명
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12명

총 계: 601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2조(정원의 총수) 거창군의 <u>본청,</u>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군본청 : <u>215명</u> 2. 의회사무기구 : <u>16명</u> 3. 직속기관 : <u>132명</u> 4. 사업소 : 41명 5. 읍 면 : 282명	제2조(정원의 총수)거창군의 <u>집행기관</u> 및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는 다음 과 같다 1. <u>집행기관의 정원 : 589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총 계 : 601명
J. 팝 전 . <u>202명</u>	